

이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

소관부서 : 여성보육과

제정 2017 · 6 · 30 조례 제1323호
일부개정 2022 · 9 · 30 조례 제1857호
(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
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
일부개정조례)
일부개정 2025 · 11 · 7 조례 제2296호
(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
조례의 일괄개정조례, 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성별영향평가법」에 따라 이천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5 · 11 · 7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성별영향평가”란 이천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가 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5 · 11 · 7>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(이하 “평가”라 한다)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 · 11 · 7>

② 시장은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·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 · 11 · 7>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25 · 11 · 7>

제5조(평가 대상) ① 시장은 「성별영향평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(이하 “대상 정책”이라 한다)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. <개정 2025 · 11 · 7>

1.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
2.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(週期)로 수립하는 계획
3.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
4. 「지방재정법」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·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1.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
2.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
3. 이천시의 조직,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·관리에 관한 경우
4.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[제목개정 2025. 11. 7]

제6조(평가의 고려사항) 시장은 법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11. 7>

[제목개정 2025. 11. 7]

제7조(평가의 시기)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. 다만,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9. 30, 2025. 11. 7>

1.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28조에 따른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전
2.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: 해당 계획의 수립 전
3.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: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이천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 제출 전

[제목개정 2025. 11. 7]

제8조(평가서의 작성)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5. 11. 7>

1.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
2. 정책 대상자의 성비(性比) 등 정책 환경의 성별(性別) 특성
3.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

[제목개정 2025·11·7]

제9조(평가결과의 반영) ① 시장은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·11·7>

② 시장은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.

[제목개정 2025·11·7]

제10조(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) ① 시장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 업무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. <개정 2025·11·7>

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25·11·7>

[제목개정 2025·11·7]

제11조(평가 교육) ① 시장은 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·11·7>

② 시장은 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·11·7>

[제목개정 2025·11·7]

제12조(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이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5·11·7>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 <개정 2025·11·7>

1. 평가 대상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2.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·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제목개정 2025·11·7]

제13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5. 11. 7>

1. 당연직 위원 :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

2. 위촉위원 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

가.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

나. 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

다. 그 밖에 시장이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4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

2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

제15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

1.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전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제17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8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·9·30 조례 제1857호,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
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5·11·7 조례 제2296호,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
조례의 일괄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